의안번호	2211898
의 뢰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5. 11. 6.
추계번호	25F4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 세율 1%p 인상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 2개구간의 세율을 현행 대비 1%p 인상할 경우, 법인세는 2026년 5,061억원, 2030년 2조 5,14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조 5,623억원(연평균 2조 1,12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 2개구간 세율 1%p 인상(안 제55조제1항)	5,061	25,141	25,141	25,141	25,141	105,623	21,125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주요내용</th><th>비고</th></tr>
<tr><td>1</td><td>안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td><td>○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 2개구간 세율 1%p 인상

<현행>
<table><tr><th>과세표준 구간</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4%</td></tr></table>⇨
<개정안>
<table><tr><th>과세표준 구간</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td><td></td></tr>
</table>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 고
1	안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

○ 법인세 확정신고 등을 고려할 경우 2026년 귀속분에 대한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지만,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효과의 일부가 2026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효과는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했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

○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의 분포는 2023년 수준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향후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율 전망(2025.10.)에 따라 증가하되, 2027년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은 기업규모별로 상이할 것으로 가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이 최근 5년(2020~2024년)간 평균 수준으로 가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경우, 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된 점을 반영하여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을 1로 가정

❑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법인세 세부담 변경에 따라 투자·생산 등 기업의 행태가 변화할 수 있으나,

동 추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3. 상세 추계내역

❑ (2023년 신고 현황) 2023년 법인세 신고법인(2022년 귀속)의 기업규모별·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2023년 신고(2022년 귀속)기준 중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법인은 48.5만개, 전체 과세표준은 459.1조원 수준

– 각 기업규모별·과세표준 구간별 1법인당 과세표준은 0.3억원~1조 3,143억원 수준

[표 2]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 2023년 신고 기준

과세표준 구간		기업 수(개)	과세표준(조원)	1법인당 과세표준(억원)
중소기업	2억원 이하	334,346	19.5	0.6
	2억원~200억원 이하	114,473	108.6	9.5
	200억원~3,000억원 이하	416	16.5	395.6
	3,000억원 초과	5	2.8	5,613.0
중견기업	2억원 이하	672	0.1	0.8
	2억원~200억원 이하	3,004	14.2	47.4
	200억원~3,000억원 이하	511	22.7	443.8
	3,000억원 초과	1	0.5	4,730.0
대기업	2억원 이하	22,791	0.7	0.3
	2억원~200억원 이하	7,761	20.4	26.3
	200억원~3,000억원 이하	1,032	81.0	784.9
	3,000억원 초과	131	172.2	13,142.7
전 체		485,143	459.1	–

주: 과세표준이 “0”이거나 “음수”인 기업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출세액 변화) 1법인당 과세표준에 과표구간별로 세법개정 전후의 세율을 적용하여 1법인당 산출세액의 변화분을 추정한 후, 과표구간별 기업수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정

[표 3]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 2023년 신고기준

과표구간		1법인당 과세표준 (A,억원)	세율(%)		산출세액 변화분	
			현행(B)	개정안(C)	1법인당 (A×[B−C], 억원)	전체 (억원)
중소기업	2억원 이하	0.6	9	9	−	−
	2~200억원	9.5	19	19	−	−
	200~3,000억원	395.6	21	22	2.0	840
	3,000억원 초과	5,613.0	24	25	54.3	272
	소계	−	−	−	−	1,112
중견기업	2억원 이하	0.8	9	9	−	−
	2~200억원	47.4	19	19	−	−
	200~3,000억원	443.8	21	22	2.5	1,298
	3,000억원 초과	4,730.0	24	25	45.4	45
	소계	−	−	−	−	1,343
대기업	2억원 이하	0.3	9	9	−	−
	2~200억원	26.3	19	19	−	−
	200~3,000억원	784.9	21	22	6.1	6,248
	3,000억원 초과	13,142.7	24	25	130.2	17,063
	소계	−	−	−	−	23,31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총부담세액 변화)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치에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반영하여 전체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개

○ 법인세 공제·감면 등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안에 따른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치에 2023년 신고 기준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적용하여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계

- 2023년 신고 기준 법인세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은 과표구간별로 0.74~1.00 수준

[표 4]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정: 2023년 신고기준

과표구간		산출세액 변화분 (A, 조원)	산출세액/총부담세액 (B)	총부담세액 변화분 (A×B, 억원)
중소기업	200~3,000억원	840	0.90	770
	3,000억원 초과	272	0.94	256
	소계	1,112	-	1,026
중견기업	200~3,000억원	1,298	0.87	1,130
	3,000억원 초과	45	1.00	45
	소계	1,343	-	1,175
대기업	200~3,000억원	6,248	0.90	5,602
	3,000억원 초과	17,063	0.81	13,740
	소계	23,310	-	19,342
합계		25,765	-	21,54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향후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계) 향후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전망치(2025.10.)와 중간예납 비율을 고려하여 추계

○ (2027년 이후) 2023년 신고기준 세수효과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감율 전망(2025.10.)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7년 신고(2026년 귀속)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

- 2023년 신고기준 총부담세액 변화분에 신고연도인 2023년 대비 2027년 법인세 증가율 전망(16.7%)을 반영하여 산정

  ※ 법인세수: (2023년) 80.4조원 → (2027년 전망) 93.9조원('23년 대비 16.7% 증가)

- 향후 세수효과는 2026년 귀속기준 세수효과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5] 향후 총부담세액 변화분

(단위: 조원, %)

신고연도	2023년 (A)	2027년 (A × [1+16.7%])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귀속연도	2022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중소기업	1,026	1,197	1,197	1,197	1,197	1,197
중견기업	1,175	1,371	1,371	1,371	1,371	1,371
대기업	19,342	22,572	22,572	22,572	22,572	22,572
계	21,543	25,141	25,141	25,141	25,141	25,141

❑ (납부시점 배분)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효과 기간을 반영

○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3~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

[표 6]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

귀속 사업연도 \ 납부시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26	(중간예납)					
2027		(중간예납)				
2028			(중간예납)			
2029				(중간예납)		
2030					(중간예납)	

○ 기업규모별 중간예납 비율을 반영하여 2026년 세수효과를 산정

-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이 최근 5년(2020~2024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4.2%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중: 21.9%

- 대기업의 경우, 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된 점을 반영하여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중을 상향하여 적용

  ※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6.9%(최근 5년 평균)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중: 58.5%

[표 7] 2026년 귀속분 세수효과의 2026년 중간예납 반영분 산정

(단위: 조원, %)

과세표준 구간	2026년 귀속분 세수효과 (A)	중간예납액/ 총부담세액 (B)	가결산/ 중간예납 (C)	중간예납 반영 세수효과 (E=B×C×D)
중소기업	1,197	34.2	21.9	90
중견기업	1,371	34.2	21.9	103
대기업	22,572	36.9	58.5	4,868
계	25,141	-	-	5,061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 2개구간의 세율을 현행 대비 1%p 인상할 경우, 법인세는 2026년 5,061억원, 2030년 2조 5,14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조 5,623억원(연평균 2조 1,12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 2개구간 세율 1%p 인상(안 제55조제1항)	5,061	25,141	25,141	25,141	25,141	105,623	21,125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